	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1-0-6		
		제정일	2008. 02. 01.		
		개정일	2018. 02. 28.		
		페이지	1/2	관리부서	사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의담학회(이하 “법인”이라한다) 정관 제20조의3 및 대학평의원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추천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방이사와 추천감사를 추천한다.

제3조(구성 및 절차) ① 추천위원회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의원회에 둔다.

② 추천위원회 위원회는 5인으로 하되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
2.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

③ 제2항 제2호의 추천위원은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고 이 법인 및 대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이어야 한다.

제4조(위원장 등)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.

③ 추천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5조(개방이사 등의 추천 및 선임 방법) ① 이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(재직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)에 개방이사 추천위원회(이하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에 각각 대상자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 대상인원의 2배수를, 감사는 단수를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동 기간 내에 개방이사의 추천이 없을 경우, 이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와 감사를 추천하는 경우 이 법인 및 대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여야 한다.

제6조(회의소집) ① 법인 또는 대학평의원회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추천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소집한다

② 추천위원회를 소집할 때 각 위원에게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

	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1-0-6		
		제정일	2008. 02. 01.		
		개정일	2018. 02. 28.		
		페이지	2/2	관리부서	사무처

제7조(의사 및 의결 정족수) ①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위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회의록) 회의록은 서명 날인을 받은 후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이사회에 제출한다.

제9조(비밀유지) 추천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추천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공개) 추천위원회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한다

제11조(준용 및 운영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, 관계법령, 법인 정관을 준용하되, 이외 운영에 관한 필요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할 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규정은 2008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